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(송재봉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1.

발 의 자 : 송재봉 · 이연희 · 김문수
남인순 · 한준호 · 이수진
이용선 · 강준현 · 정진욱
박 정 · 민병덕 · 이광희
김기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.

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,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·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 및 측정결과의 기록·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제도를 도입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,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대외 신뢰도

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4 및 제29조의5 신설 등).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6부터 제26조의10까지를 각각 제26조의7부터 제26조의11까지로 하고, 제26조의4 및 제26조의5를 각각 제26조의5 및 제26조의6으로 하며,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4(측정기기의 설치 등) 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용 연료를 정량으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량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(이하 “측정기기”라 한다)를 연료 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·방법·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·항목·방법 등 측정 및 지

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6(중전의 제26조의5)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2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

제2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

제4장에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5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용 연료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
2.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연료 공급업을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0조제1항 본문 중 “제26조의5제1항”을 “제26조의6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6조의5제2항”을 “제26조의6제2항”으

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6조의4(측정기기의 설치 등)</u></p> <p><u>①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에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 <p><u>②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용 연료를 정량으로 공급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량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연료공급량 측정기기(이하 “측정기기”라 한다)를 연료공급 장비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측정결과 자료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</u></p>

(생략)
제26조의8(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) (생략)

제26조의9(부두운영계약의 해지) (생략)

제26조의10(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시설 사용) (생략)

제29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

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<신설>

(현행 제26조의7과 같음)

제26조의9(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) (현행 제26조의8과 같음)

제26조의10(부두운영계약의 해지) (현행 제26조의9와 같음)

제26조의11(부두운영회사의 항만 시설 사용) (현행 제26조의10과 같음)

제29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9조의5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
선박용 연료를 정량에 미달되
게 공급한 자
2.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측정
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
박연료공급업을 한 자